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공동성명]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날 짜 2016. 3. 14. (총 5 쪽)

성 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1.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끝.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1)]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 이 성명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 붙임문서1.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